출산휴가 12주로 늘린다

여성정책심의위 생리휴가 무급으로…남녀차별 개선

남성에게도 '육아 휴직제' 적용키로

오는 95년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남녀차별적 요소가 모두 없어지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의 교육·연수과정에 남녀평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목이 새로 추가된다. 이와 함께 현행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는 대신 산전·산후 휴가가 지금의 6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인 12주로 늘어나고, 유급 산전·산후휴가 등 모성보호에 따르는 비용을 사회보험이나 국가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3일 이회창 국무총리 주재로 최형우 내무·김두희 법무·서상목 보사·남재희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1차 근로여성 복지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국가와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의 성차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확정된 기본계획은 또 남자도 배우자의 출산 때 일정기간 산모를 간호할 수 있도록 출산간호휴가제를 도입하고 지금까지 여성에게만 주었던 육아휴직제를 남성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은 이와 함께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을 크게 확대해 지금까지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만 허용했던 보육사업을 개인·단체·기업 등에 제한없이 개방하고 민간과 기업의 보육사업 투자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상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 사이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현행 근로기준법의 여성 관련 조항과 남녀고용평등법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고용평등 및 여성근로자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을 97년에 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했던 여성의 휴일·야간근로와 연장근로 제한조처도 크게 완화해 휴일·야간근로의 경우 본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1일 2시간, 1주 6시간으로 제한했던 연장근로 역시 남자 근로자와 동등하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